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매매업자는 계약 체결하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점검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하여 성능점검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,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현행의 매매업자의 성능점검 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. 또한, 자동차관리법에 매매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, 행정처분 세부기준 및 내용 등이 누락되어 있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성능점검내용 고지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강화(안 별표 제5호)

- 성능점검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

나. 행정처분 세부기준 보완(안 별표 제5호)

- 매매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법조문을 정정하고, 누락된 행정처분 세부내용을 보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9. 21. ~ 10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
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5호가목6) 중 ‘법 제56조’를 ‘법 제56조제1항’으로 하고, 12)를 다
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)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 업신고하거나 「부가 가치세법」 제8조제8 항, 「소득세법」 제16 8조 또는 「법인세 법」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	법 제66조 제 1항제16호	등록취소	
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

별표 제5호나목 중 ‘12)’를 ‘13)’으로, 라)의 ‘1차: 사업정지 30일, 2차: 사
업정지 90일, 3차: 등록취소’ 를 ‘1차: 사업정지 30일, 2차: 등록취소’로 하
며, 사)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

사) 법 제58조의6제3항 을 위반하여 매매금 액을 자동차 매수인 에게 반환하지 아니 한 경우	법 제66조제1 항제12호바목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	
--	---------------------	--	--

‘사)’를 ‘아)’로, ‘사)’ 중 ‘법 제66조제1항제12호아목’을 ‘법 제66조제1항제

12호사목’으로, ‘아)’를 ‘자)’로, ‘아)’의 ‘법 제66조제1항제12호사목’을 ‘법 제66조제1항제12호아목’으로 하며, 다목 ‘13)’을 ‘14)’로, 라목 ‘14)’를 ‘15)’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종전 규정의 별표 제5호나목12)라)에 따라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별표 제5호나목13)라)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1차 위반한 것으로 보고, 2차 위반의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	개정안				
[별 표] 행정처분의 기준(제5조 관련)					[별 표] 행정처분의 기준(제5조 관련)				
1. ~ 4. (생략)					1. ~ 4. (현행과 같음)				
구 분	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처 분 내 용		구 분	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처 분 내 용	
			대행자 또는 사업자	기술 종사원				대행자 또는 사업자	기술 종사원
5. 자동 차관 리사 업자	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 록을 한 경우	법 제66조제 1항제1호	등록취소		5. 자동 차관 리사 업자	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	법 제66조 제1항제1호	등록취소	
가. 공 통사 항	2)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하거나 등 록을 한 사업자가 1 년 이상 휴업한 경우	법 제66조제 1항제2호	등록취소		가. 공 통사 항	2)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 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	법 제66조 제1항제2호	등록취소	
	3) 법 제53조제1항 후 단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 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	법 제66조제 1항제3호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			3) 법 제53조제1항 후 단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	법 제66조 제1항제3호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	
	4)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	법 제66조제 1항제4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			4)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 하거나 같은 조 제4항	법 제66조 제1항제4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	

달하거나 같은 조 제 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	3차: 등록취소
5) 법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·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5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등록취소
6) 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6호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6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7)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		
가)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	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1호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
나)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	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2호	① 사업장의 전부 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등록취소 ② 사업장의 일부 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	법 제66조제	3차: 사업정지 90일

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	3차: 등록취소
5) 법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·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5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등록취소
6)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6호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6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7)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		
가)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	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1호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
나)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	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2호	① 사업장의 전부 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등록취소 ② 사업장의 일부 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
다) 해당 사업과 관련 한 부정할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 의 부정할 행위	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 1항제3호 법 제66조제 1항제7호 및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
라) 해당 사업에 관하 여 이용자의 요청 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 위	법 제57조제 1항제4호 법 제66조제 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마) 해당 사업에 관하 여 이용자가 요청 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 매하는 행위나 이 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 는 행위 또는 영 업을 목적으로 손 님을 부르는 행위	1항제5호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60일 3차: 등록취소
8) 법 제58조제7항을 위 반하여 기록·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6조제 1항제8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20일 3차: 사업정지 30일
9)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수	법 제66조제 1항제10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
다) 해당 사업과 관련 한 부정할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할 행위	법 제66조 제1항제7호 및 법 제57 조제1항제3 호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
라) 해당 사업에 관하 여 이용자의 요청 을 정당한 사유 없 이 거부하는 행위	법 제66조 제1항제7호 및 법 제57 조제1항제4 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마)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 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 으로 손님을 부르 는 행위	법 제66조 제1항제7호 및 법 제57 조제1항제5 호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60일 3차: 등록취소
8) 법 제58조제7항을 위 반하여 기록·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 우	법 제66조 제1항제8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20일 3차: 사업정지 30일
9)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수수료	법 제66조 제1항제10 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
	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10)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,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11) 법 제66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11호 법 제66조제1항제15호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등록취소 등록취소			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10)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,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11) 법 제66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12)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8항,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11호 법 제66조제1항제15호 법 제66조제1항제16호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		
나. 자동차 매매업자	12)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)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	법 제66조제1항제12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			나. 자동차 매매업자	13)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)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	법 제66조제1항제12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	

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 을 하지 않은 경 우	가목	3차: 등록취소
나) 법 제57조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 유자가 아닌 자로 부터 자동차의 매 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경우	법 제66조제 1항제12호 나목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
다) 법 제57조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 차에 관하여 거짓 이나 과장된 표 시·광고를 한 경 우	법 제66조제 1항제12호 다목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
라) 법 제58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를 위반하여 고지 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고지한 경우	법 제66조제 1항제12호 라목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
마) 법 제58조제2항 을 위반하여 시 설·장비 및 자격	법 제66조제 1항제12호 마목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등록취소

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 의 신청을 하지 않 은 경우	호가목	3차: 등록취소
나) 법 제57조제3항제 1호를 위반하여 등 록원부상의 소유자 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 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경우	법 제66조 제1항제12 호나목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
다) 법 제57조제3항제 2호를 위반하여 매 도 또는 매매를 알 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·광고 를 한 경우	법 제66조 제1항제12 호다목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
라) 법 제58조제1항제 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	법 제66조 제1항제12 호라목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등록취소
마)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·장 비 및 자격을 갖추	법 제66조 제1항제12 호마목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등록취소

	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의 성능·상 태의 점검을 받은 경우					지 않은 자에게 같 은 조 제1항의 성 능·상태의 점검을 받은 경우			
	바) 법 제58조의3제2 항을 위반하여 보 증보험에 가입하 지 않거나, 공탁을 하지 않고 자동차 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	법 제66조제 1항제9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60일			바) 법 제58조의3제2 항을 위반하여 보 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, 공탁을 하 지 않고 자동차매 매업의 업무를 시 작한 경우	법 제66조 제1항제9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60일	
	사) 법 제59조제1항 을 위반하여 신고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	법 제66조제 1항제12호 바목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			사) 법 제58조의6제3항 을 위반하여 매매 금액을 자동차 매 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6조 제1항제12 호바목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	
	아) 법 제59조제2항 에 따른 준수사항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66조제 1항제12호 사목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			아)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신고를 한 경 우	법 제66조 제1항제12 호사목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	
다. 자 동차 정비 업자	13)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가) 삭제 <2018. 6. 2					자)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 우	법 제66조 제1항제12 호아목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	

8.>		
나)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·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등록취소
다)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. 다만,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.	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등록취소
라)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	법 제66조제1항제13호라목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6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
다. 자동차정비업자	14)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) 삭제 <2018. 6. 28.> 나)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·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다)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. 다만,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	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등록취소	
		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등록취소	

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		
마)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4조(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구조·장치의 변경 작업을 하거나,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의 구조·장치를 변경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13호마목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6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바) 거짓으로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·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13호바목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
사)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13호사목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아)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	법 제66조제1항제13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

제외한다.		
라)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13호라목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6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마)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4조(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구조·장치의 변경 작업을 하거나,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의 구조·장치를 변경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13호마목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6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바) 거짓으로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·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13호바목	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
사) 법 제58조제4항에	법 제66조	1차: 사업정지 10일

	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)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아목 법 제66조제1항제13호자목	3차: 사업정지 90일 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60일 3차: 사업정지 90일	
라.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	14)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)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)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다) 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폐	법 제66조제1항제14호가목 법 제66조제1항제14호나목 법 제66조제1항제14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등록취소 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60일 3차: 사업정지 90일 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	

	다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)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)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제1항제13호사목 법 제66조제1항제13호아목 법 제66조제1항제13호자목	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 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 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60일 3차: 사업정지 90일	
라.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	15)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)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)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	법 제66조제1항제14호가목 법 제66조제1항제14호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등록취소 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60일	

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	다목	3차: 사업정지 90일
라) 법 제5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, 자동차등록증·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14호 라목	① 자동차 폐차 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 ② 자동차등록증 등 폐기 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
마)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14호 마목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
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	호나목	3차: 사업정지 90일
다) 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14호 다목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라) 법 제5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, 자동차등록증·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14호 라목	① 자동차 폐차 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 ② 자동차등록증 등 폐기 1차: 사업정지 30일 2차: 사업정지 90일 3차: 등록취소
마)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14호 마목	1차: 사업정지 10일 2차: 사업정지 30일 3차: 사업정지 90일

6. ~ 7. (생략)

6. ~ 7. (현행과 같음)